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불합리한 행정사무 분장사항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사무 분장사항 조정(안 제4조, 안 제14조)

-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·관리 : 시설관리사업소 ⇒ 문화관광과
- 야생동물 보호, 수렵면허증 발급·관리 : 산림과 ⇒ 환경과
- 성주생활체육공원 운영·관리 : 새마을체육과 ⇒ 시설관리사업소

나. “호적”용어를 “가족관계등록”으로 변경(안 제16조)

- 폐지된 호적법 상의 용어인 “호적”을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가족관계등록”으로 용어 변경(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122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, 별첨 1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 2

2) 입법예고(2019. 11. 7.~2019. 11. 12.) 결과, 이상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성별영향평가 분석 : 제외대상(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)

5) 비용추계서, 별첨 3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·관리

제4조제9항제7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4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 제26호를 제24호로 한다.

7. 야생동물보호

8. 수렵면허증 발급관리

제14조제4호가목(5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(6)부터 (9)까지를 각각 (5)부터 (8)까지로 하며, 같은 목에 (9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9) 성주생활체육공원

제16조 중 “호적·주민등록업무”를 “가족관계등록·주민등록업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・군・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[별첨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분장사무) ① ~ ③ (생 략)	제4조(분장사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문화관광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	④ ----------.
1. ~ 14. (생 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5. 성산동고분군전시관 운영·관리
15.·16. (생 략)	16.·17. (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)
⑤ ~ ⑧ (생 략)	⑤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환경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	⑨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야생동물보호
<신 설>	8. 수렵면허증 발급관리
7. ~ 29. (생 략)	9. ~ 31. (현행 제7호부터 제29호까지와 같음)
⑩ ~ ⑬ (생 략)	⑩ ~ ⑬ (현행과 같음)
⑭ 산림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	⑭ ----------.
1. ~ 15. (생 략)	1. ~ 15. (현행과 같음)
16. 야생동물보호	<삭 제>
17. 수렵면허증 발급관리	<삭 제>
18. ~ 25. (생 략)	16. ~ 23. (현행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)

26. (생 략)	24. (현행 제26호와 같음)
⑮ (생 략)	⑮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소관사무)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 1 4 조 (소 관 사 무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시설관리사업소	4. ----------
가. 관리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	가 . ----------.
(1) ~ (4) (생 략)	(1) ~ (4) (현행과 같음)
(5) 성주성산동 고분군전시관	<삭 제>
<신 설>	(9) 성주생활체육공원
(6) ~ (9) (생 략)	(5) ~ (8) (현행 (6)부터 (9)까지와 같음)
(10) ~ (14) (생 략)	(10) ~ (14) (현행과 같음)
나. ~ 라. (생 략)	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직무) 읍·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·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 발급, 리·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	제 1 6 조 (직 무) ---------- 가족관계등록·주민등록업무 ----------.